
인터넷실명제 인권단체 입장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청구

바리

2008년 4월 4일 오전 1:58

*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기자

발신 진보네트워킹센터 (장여경 :)

제목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발표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청구의 건

날짜 2008. 4. 4. (총 4 쪽)

보도협조요청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실명제 거부 인터넷언론에 대해, 인권단체 지지 입장 발표

-- 지난 대선 실명제 거부로 1천만원 과태료 처분받은 <민중언론 참세상>,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1. 언론개혁과 진실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2008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월 27일부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되는 가운데, 선관위의 실명인증시스템 설치 요구를 거부하는 인터넷언론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노동넷 방송국 nodong.net, 대자보 www.jabo.co.kr,
레디앙 www.redian.org, 미디어스 www.mediaus.co.kr,
미디어충청 www.cmedia.or.kr, 민중언론참세상 www.newscham.net,
민중의소리 www.vop.co.kr, 부안21 www.buan21.com,
에큐메니안 www.ecumenian.com, 울산노동뉴스 www.nodongnews.or.kr,
이주노동자방송국 www.migrantsinkorea.net,
인권오름 www.sarangbang.or.kr/kr/oreum/,
인터넷저널 www.injournal.net, 인천뉴스 www.incheonnews.com,
일다 www.ildaro.com, 참소리 www.cham-sori.net,
컬처뉴스 www.culturenews.net, 코카뉴스 www.cocanews.com,
함께걸음 www.cowalknews.co.kr, PD저널 www.pdjournal.com

3. 이처럼 시행 3년째를 맞는 선거시기 실명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식지 않는 가운데, 18개 인권단체가 실명제를 거부하는 인터넷 언론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하여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익명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별첨 성명 참조)

4. 한편, <민중언론 참세상>은 지난 2007 대통령선거 당시 댓글게시판에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태료 1천만원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오늘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신청서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가 검열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인터넷언론 이용자에게 권리구제수단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전화 이메일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2008년 총선시기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별첨>

우리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

- 2008년 총선시기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지난 3월 27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실명을 확인받은 사람만이 인터넷언론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있다. 공공기관이나 포털 등 주요 인터넷사이트에는 이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상시적인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최근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빌미로 인터넷실명제가 더욱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는 오직 실명 확인을 한 사람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인터넷실명제의 확산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실명인증 시스템의 설치를 거부하며 꾸준히 독자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온 인터넷언론들을 지지해 마지 않는다.

익명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유권이고, 소수자와 약자가 두려움 없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려면 익명으로 발언할 수 있는 자유 또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름없는 시민의 과감한 비판과 용감한 고발은 언제나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 왔고, 익명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이다.

특히 어느 나라에서나 선거시기에는 국민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비밀투표의 원칙에서도 볼 수 있듯 선거시기 익명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다. 그런데 선거시기에 실명으로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하는 인터넷실명제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중대하게 가로막는 것이다.

실명을 사용할 것인지 익명을 사용할 것인지는 개인과 공동체가 선택할 문제이다. 국가가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며 국민에게 실명을 밝히도록 강제하고 의견 발표를 위축시키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다름이 없다. 또한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편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때문에 의견 밝히기를 꺼리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불공정한 선거운동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발언에 대하여 반대한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현실 공간에서 그러하듯 사후에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면 될 일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악플을 올릴 것이라고 전제하고 사전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다.

국가적인 인터넷실명제를 빌미로 수많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를 마구 수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위협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최근 정부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인터넷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정보인권을 온전히 실현하는 길은 무차별적인 실명 확인과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는 길 뿐이다.

익명이 범죄시되는 사회 속에서 인권은 기대할 수 없다. 실명 확인의 강박 속에 용기있는 발언이 사라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다. 특히 수사편의를 명분으로 확대되는 실명제는 경찰국가의 부활을 가져올 것이다. 아무리 인터넷 실명 확인이 우리 생활에서 흔한 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참으로 기괴한 인권침해라는 점은 분명하다. 올해 총선에도 실명확인시스템 설치를 거부하며 저항하는 인터넷언론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큰 증거이다.

2008년 4월 4일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사회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피자매연대, 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참세상과태료-위헌심판제청-200800404.doc
911K